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2019. 4



머리말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써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중소기업의 사업 단계별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한편,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등 여러 세정지원 제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제·세정지원 제도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관리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법인납세국장

이 권 오

Contents

제1장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1. 개요	8
2. 업종기준	9
3. 규모기준	11
4. 독립성 기준	13
5. 중소기업 유예기간	21

제2장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I. 창업단계 지원내용	27
1. 개요	27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8
II.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46
1. 개요	46
2.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48
3.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50
III. 사업단계 지원내용	52
1. 개요	52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9
3. 2018년부터 확대된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73
IV.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77

제3장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80
2. 가업상속공제	82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5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9
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106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109

제4장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1. 중소기업 기준	114
2. 중복지원 배제	115
3. 농어촌특별세 적용	115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117
5. 최저한세의 적용	117
6. 구분경리	119

제5장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128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129
3.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130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 130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130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131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131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132
9.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132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132
11.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133
12.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133
13.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135
14.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135

일러두기

범례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기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기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법	법인세법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법	소득세법
소령	소득세법 시행령
농특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장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1. 개요	8
2. 업종기준	9
3. 규모기준	11
4. 독립성 기준	13
5. 중소기업 유예기간	21

제1장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4)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5 및 같은 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

■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조특령 §2)

-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② 규모 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③ 독립성 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④ 졸업기준 : 위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2. 업종기준(조특령 §2①4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모든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업종의 분류기준

-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특법 §2③)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조특법 §2③단서)

■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조특칙 §2①)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할 것
-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되며, 위 ①, ②, ③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사례

• **국외 제조업체에 제조의뢰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454, '04.3.16.)

•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301, '04.2.27.)

•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 2007서1127, '07.07.11.)

■ **겸업법인의 주업판정**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 §2③)
 -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조특칙 §2④)

3. 규모기준(조특령 §2①1호)

■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졸업기준에 해당)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출액의 정의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칙 §2④)
 -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과-208, '11.3.23.)
 -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계상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 인적분할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 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은 분할등기일 이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법인-3034, '08.10.23)
- 20이상의 사업 영위 시 매출액
 - 20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170, '06.06.21)

붙임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기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800억원 이하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600억원 이하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4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문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4.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3호)

■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합니다.
(‘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간접소유분 포함하여 계산)

* ‘09.2.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제외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2.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출자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함,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함)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함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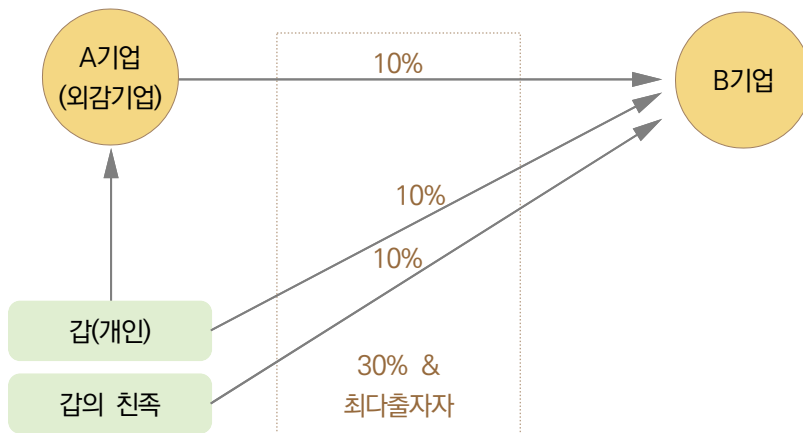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로 별표1의 기준 이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지배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종속기업)의 관계를 말함 (중기령 §제3의2)

*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법규과-1133, '13.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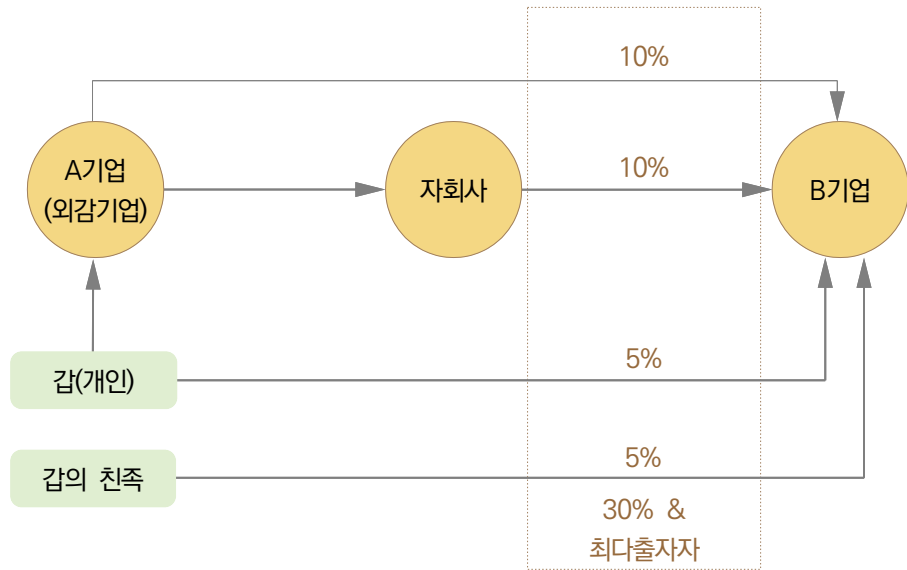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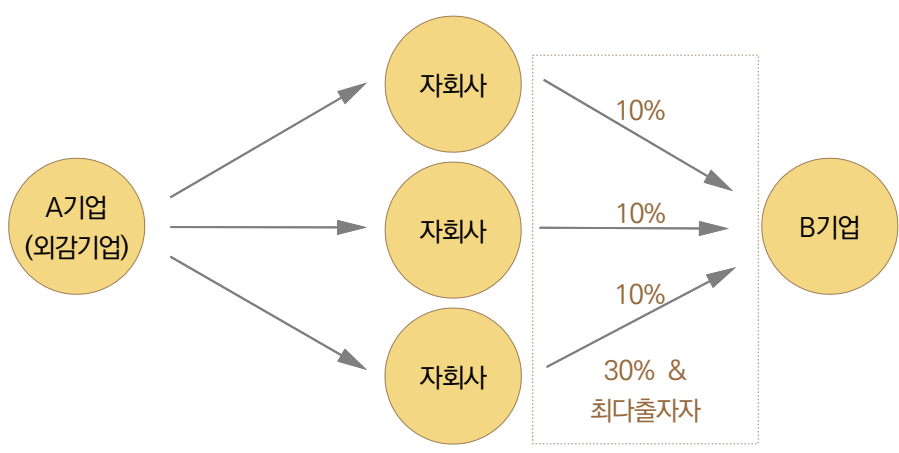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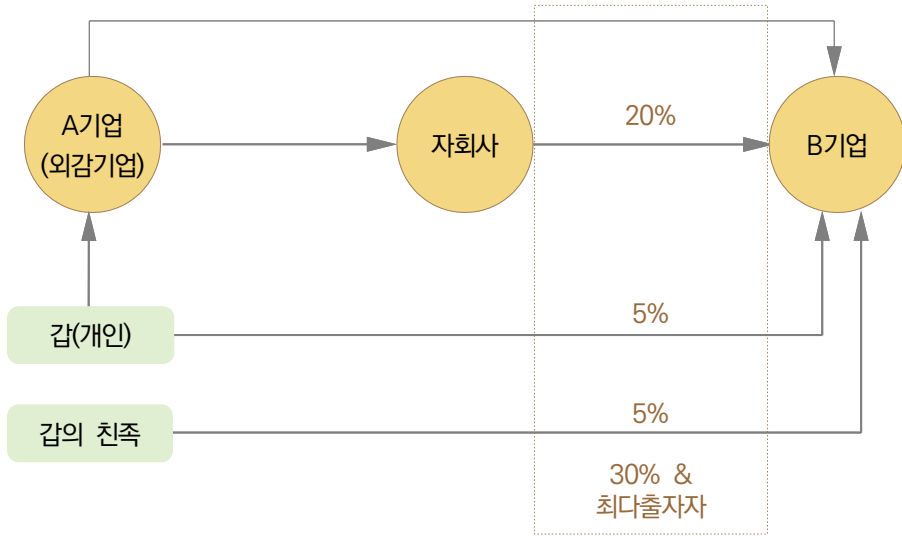
②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③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④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⑤ 기업간의 지분관계가 ①~④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종속관계로 보지 아니함(중기령 §3의2③)

●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제도 차이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시기	'12. 1. 1.	'11. 1. 1.
중소기업 초과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	
매출액의 판단시점	해당 과세연도말	직전 과세연도말
지배종속관계 판단시점	해당 과세연도말	직전 과세연도말

■ 독립성기준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연혁

적용기간	독립성 기준
'02. 5.20. ~'05. 3.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05. 4. 1. ~'05.12.26.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05.12.27. ~ '09. 3.24.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09. 3.25. ~ '09.11.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09.11.19. ~ '10.12.31.	1. 변동없음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1.1.1. ~ '11.12.31.	1. 변동없음 2. 변동없음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적용기간	독립성 기준
'12. 1. 1. ~ '14.12.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동없음 2. 변동없음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15.1.1. ~ '15.6.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15.6.30. ~ '15.12.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동없음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변동없음

적용기간	독립성 기준
'16.1.1. ~ '16.4.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16.4.5. ~ '17.1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가 아닐 것 <p>* '17.7.26.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p>

적용기간	독립성 기준
'17.10.17. ~ '17.12.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가 아닐 것
'18.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합니다.(조특칙 §2⑤)

5. 중소기업 유예기간(조특령 §2②)

- 중소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매출액이 별표1의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

-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통상 4년입니다.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영 §2②)
- 유예기간은 법인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유예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별표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2⑤)

- 중소기업 유예의 배제

- 아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령 §2② 단서)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③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이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2015. 1. 1. 이후 관계기업기준은 제외)
-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⑤ 주된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변 경 전	변 경 후	유예기간 적용여부
제 조 업	도 매 업	○
건 설 업	호 텔 업	×

• 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 배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예 : 주업이 제조 → 도매)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뜻 기본통칙 4-2...5 ① 및 재조예-153, '04.3.13)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유예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조예46070-400, '98.11.6)

•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중소기업간 합병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8, '10.5.1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지정·해제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05.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5-법인-1110, '15.9.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재조예-843, '04.12.21)

제2장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 I. 창업단계 지원내용 27
- II.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46
- III. 사업단계 지원내용 52
- IV.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77

창업단계

-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최대 100%) 감면
- 법인설립등기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 창업 후 3년간 재산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저율과세(10%)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투자금액의 3, 4%)
- 각종 시설투자세액 공제
- 창투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30%, 50%, 100%) 소득공제

사업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
- 접대비 기준금액 추가 인정
-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I. 창업단계 지원내용

1. 개요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의 50% 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감면 ⇨ 최대 100% 감면)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스업종 중소기업: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9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까지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58의3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취득세 면제 (지특법 §58의3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감면 (지특법 §58의3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감면금액 : 창업후 5년('12.12.31. 이전 창업은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 신성장서비스업종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 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의 일정한 경우 25%) 추가 감면

2-1. 개 요

-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86.5.12. 제정·시행되었으며
 -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86.12.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1.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과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
 - 창업일, 확인받은 날 또는 해당되는 날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12.12.31. 이전에 창업·지정·확인인 경우 3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합니다.(법 §6)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시 최대주주 등 해당(조특령 §5①)

-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인쇄출판업, 연구 개발업, 관광숙박업 등(조특령 §27의4⑤)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기업

- ① '21.12.31. 이전(이하 같음)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확인 받지 않는 내국인은 제외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감면 배제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감면대상 사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19.1.1 이후부터)은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18. 물류산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27. 사회복지 서비스업('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1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29.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31. 이용 및 미용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서면2팀-610, '05.4.29)

-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조심2014지1160, '14.10.20)

■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통칙6-0...1)

* 감면대상 기업 중 29쪽의 ②, ③, ④의 중소기업은 지역구분하지 않으며 18.5.29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17.6.20. 개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 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 • 평택시·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포천시·양주시 • 김포시·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남동 국가 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기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향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2-3.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6⑥)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네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인수비율의 계산방법(30% 이하 요건)

$$\frac{\text{인수·매입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text{사업개시 당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leq 30\%$$

- 인수·매입자산과 사업개시 당시 보유자산의 범위는 양자 모두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건설중언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은 제외합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서면2팀-742, '05.5.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2. 법인사업자로 창업: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의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관련 해석사례

•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로 취득하여 동일 사업 영위시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인-21435, '15.04.30.)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조예46019-31, '02.3.8)

•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동일 사업 영위시 감면 배제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조예46019-36, '99.9.30)

•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 이전시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재조예-100, '07.2.9)

• 법인전환의 경우 감면배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설립되었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업태 및 종목이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체의 업태 및 종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4지2142, '15.4.9)

• **창업 후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업종 추가에도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163, '10.02.23)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법인전환시 감면 계속 적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잔여 감면기간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국심2004구3762, '06.03.10)

2-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민간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 인력,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5.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 §6②·③ 및 조특령 §5④)
-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②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기준비율(수입금액의 5%)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조특령 §5⑤)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요건(수입금액의 5%)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일(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우수 평가기업을 말하며
 - 현재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 및 같은 법 시행령 §18의3)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은 (3)의 요건만 적용)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관련 해석사례

•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법인 -379, '14.09.1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재조에46019-122, '01.7.27)

•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2389, '00.12.15)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 감면 해당 여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에46019-200, '01.12.1)

• 기존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감면 해당 여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 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제도46012-10680, '01.4.19)

•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및 동 조 제5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0-140, '10.05.13)

• 인적분할 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431, '02.7.25)

2-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 §6④ 및 조특령 §5⑩)

- 세액감면대상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고효율제품 등 아래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7. 감면세액

■ 감면기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 '12.12.31.이전 창업·지정의 경우 4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 '12.12.31.이전 창업·지정·확인인 경우 4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6②)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6④)

■ 감면세액의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50\sim 100\%)$$

-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법인세과-4046, '08.12.17)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³⁾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³⁾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²⁾	그 외 ³⁾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그 외			
5년 100% ¹⁾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1)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2)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18.1.1. 이후 창업·확인·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text{감면소득}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text{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times \frac{\text{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text{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25%) 추가감면
 - 추가감면율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증가율 × 1/2
 - 한도 : 최대 50%(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25%)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 10인, 기타 업종 : 5인)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 조특법 §6⑦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④단서)

적용사례

(사례1)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
[('18) 10명 → ('19) 15명 → ('20) 20명]

- ('18 과세연도) 50% 감면
-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2) = 총 75%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사례2)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
[('18) 8명 → ('19) 16명]

- ('18 과세연도) 50% 감면
-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감면세액의 승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 통합 후 존속법인이나 설립법인 또는 전환법인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31④, §32④)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6⑦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104의18②)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2의2)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1④,⑤)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2④)
-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33의2)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63)
-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63의2②)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64)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85의6①,②)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44)

*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부당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

■ 감면세액의 신청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1. 개요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시 2%, 수도권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존권역 투자시 1%)를 세액공제 * '15년 신규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4%를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기증은 기증한 설비의 시가,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손금산입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 §10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형시설, 절수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 가스감축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직장어린이집은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구 분	지 원 내 용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 개발시설, 내진보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해당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1%,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6%(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5%, 중견기업 7%)를 세액공제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당 1천만원 차감
영상컨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25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 제작비용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7%)를 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

2.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 공제세액 : 해당 투자금액의 3%(15년 신규상장 중소기업은 4%)

* (중견기업) 15년 신규상장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4%
수도권 밖 투자시 2%,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 투자시 1%

2-1. 개 요

-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내수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3%(15년 신규상장기업은 4%)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합니다.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기업

- 제1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 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 사업용자산(조특령 §4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아래의 자산을 말합니다.
 - 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조특령 별표1의 건축물 등 제외)
 -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④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 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2 12호). POS(Point of Sales system)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 정보보호 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하며(국가정보화기본법 §3 6호),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가 공제대상입니다.

2-3.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146)

-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3-1. 개 요

-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한 직접 감면제도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선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 각종 시설투자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3-2. 감면대상

- 기본적으로 각종 시설 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고품과 금융리스(조특칙 §3의2)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또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서 제외됩니다(조기통 5-0...3).

3-3. 공제시기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4.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약

구 분	관련규정	투자금액에 곱하는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1호	7%	3%	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2호	7%	3%	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3호	10%	5%	3%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4호	10%	5% (10%*)	3% (10%*)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①5호	10%	5%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①6호	7%	3%	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4	6%	3%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5의5	10%	7%	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25의6	10%	7%	3%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의7	2%+ α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1/5) * 한도 3%		

* 직장어린이집은 10%

Ⅲ. 사업단계 지원내용

1. 개요

1-1. 발생소득·비용 등에 대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구분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업 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소기업</td> <td>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제외한 감면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중기업</td> <td>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body> </table>	업 종		감면율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20%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제외한 감면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5%	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15%
	업 종		감면율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20%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제외한 감면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5%															
		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 1억원(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억원에서 감소인원 1명당 5백만원씩 차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max(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18.12.31 일몰종료) - 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 																	

구 분	지 원 내 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조특법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술자 -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최저한세 우대적용 (조특법 §13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 -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 이하 12% 과세표준 1,000억 초과 1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법법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액 내에서 환급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85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세액감면

1-2.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1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 배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직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20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제율은 10%(2018. 1.1. 이후 30%) **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15% 세액공제 적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2015.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제율은 10%(2018. 1.1. 이후 30%) **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15%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 10%(중견 5%) * 20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비성서비스업 영위 사업자를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p style="text-align: right;">(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중소(3년간)</th> <th rowspan="2">중견 (3년간)</th> <th rowspan="2">대기업 (2년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3년간)		중견 (3년간)	대기업 (2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등	1,100	1,200	800	400
구분	중소(3년간)		중견 (3년간)	대기업 (2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등	1,100	1,200	800	400														

구 분	지 원 내 용
<p>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30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2018.11.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 7백만원)
<p>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0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세액공제
<p>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30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하 “청년 등”)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세액공제 일정한 중소기업이 20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2년 적용)

1-3. 중소기업 지방이전 등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본점도 함께 이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다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조특령 §60②)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특법 §63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 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본사이전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 *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조특령 §60②)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사업 소득에 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

구 분	지 원 내 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3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1-4. 기타 조세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접대비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25①2) (조특법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 2,4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
중소기업 대손금 특례규정 (법인세법시행령 §19의2①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가능 * 일반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만 대손처리 가능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법 §144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받을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년, R&D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소득세법 §128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과세기간의 1월~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는 -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법인세법 §64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한 이내*에 분납가능 * 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
전통주·민속주 제조업체세율경감 (주세법 §22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연도 출고실적 500kℓ(증류주 250kℓ) 이하 전통주 등 제조자에 대해 주세율 50% 경감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감면금액 : 지역별(수도권)로 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10%~30%, 중기업은 5~15%,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은 10%

2-1. 개 요

- '92년 당시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92년 신설당시 제조업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되었다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어 현재 46개 업종으로 확대되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지식기반 산업·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법 §7)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조특령 §6⑤)
 -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부칙 제22조)
-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같은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조예-843, '04.12.21.)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기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품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감면 적용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 '19.1.1 이후부터)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6①)
23. 엔지니어링사업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 :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정성 검토, 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보수,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같은 법 시행령 §2)을 말함
 - *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은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24.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조특령 §5⑥)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사업장(조특령 §54①) [자동차부분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해당되지 않음]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 [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을 말함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지원기관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 40. 무형재산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원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 43.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46. 임업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184, 2002. 01.31)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의 감면적용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조특령 §6①)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도매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서는 도매업과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외의 업종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사례

• 국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도매업에 해당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때의 감면비율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조예-805, '04.12.1)

• 소사장제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를 말함]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1팀-967, '05.8.16)

다만,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760, '00.3.23)

•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 용역의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627, '00.3.7)

• **도급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2116, '03.12.15)

• **의료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가능 여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등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1558, '05.9.27)

• **비주거용 건설업의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482, '04.3.17)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출판업이 제조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함(법인-883, '10.09.29)

2-3. 감면율

■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03년 이전	'04년	'05년 이후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10%	20%
		도·소매, 의료업	10%	5%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15%	30%
		도·소매, 의료업	10%	5%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20%	10%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15%	15%
		도·소매, 의료업	10%	5%	5%

* 지식기반사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수도권내보다 수도권외의 지역, 중기업보다 소기업, 그리고 도매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비해 제조업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 수도권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지식기반산업은 감면가능)
- 본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고 제조사업장이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
 - 종전에는 수도권외 감면비율을 적용받았으나 '05.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수도권내 감면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 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재조예46019-176, '01.10.20)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제외지역 없음)

2-4.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5\sim 30\%)$$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감면적용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도래기한(현재 '20.12.31.)까지 감면 적용

-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 감면소득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입니다.

■ 감면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 * 위 산식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 1억원

■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104의18②)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아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2의2)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1④,⑤)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2④)
-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33의2)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63)
-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63의2②)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64)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85의6①,②)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44)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부정과소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②,③)

■ 감면세액의 신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 감면대상 소득 여부

감면대상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1187, 2009.10.26.)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 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영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함(서이46012-10411, '02.3.7)

• 2이상의 사업영위시 소기업 해당 여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등이 소기업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함(국심 2004서920, '04.5.13)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0800, '02.4.16)

• 중복적용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6)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 §7)은 중복적용 배제되며, 그 적용배제된 분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국심97부2409, '98.6.8)

• 과세관청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예46019-88, '03.3.29)

• **폐업한 사업연도의 감면 적용 가능 여부**

'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02.1.1~'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0540, '03.3.18)

•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선원부용선)한 상태에서 해당 선박을 그대로 재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1064, '10.11.15)

• **소기업 판정 방법**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따른 수탁생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기타사업의 인원기준에 따라 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재조특-635, '10.07.01)

• **결손금의 통산 여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법인-338, '10.04.07)

3. 2019년부터 확대된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단계	주요 내용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 세액공제(최대 3년) ← 종전 최대 2년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단,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 제외)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 ← 종전 3백만원~1천만원
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 10%(중견 5%) * 20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고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전환 - 종전 소득공제 방식 →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세액공제
임금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1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 배제

3-1. 고용증대 세액공제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적용기업) 모든 기업(단,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 제외)
-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지원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 종전 1~2년에서 추가 확대
- (1인당 연간 공제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770만원)	450만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 ()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시 적용

** 청년(15세~29세)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허용. 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하는 분과 중복적용 배제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 확대

- (종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간 지원
- ('19년 이후 신고분부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지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공제금액 확대

- (종전)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 ('19년 이후 신고분부터) 중소 1,100만원, 중견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3-2.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제도 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 10%(중견기업 5%)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아이당 1번만 적용,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미적용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정

3-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확대

■ 개정 취지

-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방식 전환

-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공제방식)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세액공제

3-4.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 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10%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 배제

IV.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31, 지특법 §57의2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신설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실제 처분시까지 과세유예)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승계하여 적용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해 통합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 지특법 §57의2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따른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조특법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 거주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50% - 과세이연액 = 양도차익 × (취득가액 ÷ 양도가액)
사업전환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 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세특례 (조특법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법인 등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구 분	지 원 내 용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09.12.31. 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고 -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7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12.12.31.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과세 표준 계산시 공제

제3장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80
2. 가업상속공제 82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95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9
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 106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109

제3장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이 있습니다.



참고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① 가업상속공제 제도

-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상증법 §18②)
- 적용대상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 기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시 200억원, 20년 이상시 300억원, 30년 이상시 500억원 한도

②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30의6)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
- 특례내용 :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 * 일반 증여재산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10~50% 세율을 적용

③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 경감으로 자녀의 창업 지원(조특법 §30의5)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중소기업 창업 시
 -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④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조특법 §101)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위 ①, ②, ③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임)
- 적용내용 : 중소기업 주식을 '20.12.31. 이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이라도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 * 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시가 등에 일정률을 할증 평가하여 과세(상증법 §63③)
 - 일반기업 주식 : 20%(지분율 50% 초과 시 30%) 할증평가

⑤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기업상속분 상속세 납부 편의 제공(상증법 §71)
- 적용대상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 지원내용 : 기업상속재산 해당 상속세액은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 해소
 - 총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 50% 이상 : 총 20년 분할납부 또는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납부 가능
 - 50% 미만 : 총 10년 분할납부 또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납부 가능
 - *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임

2.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 상속공제와 기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공제의 종류

기초공제, 기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 기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1) 기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기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업상속재산이란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 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법인세법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2) 기업상속공제의 확대 내용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기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07.12.31. 이전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기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08.1.1.~12.31.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 '10.12.31.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기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60억원 •15년이상 : 80억원 •20년이상 : 100억원
'11.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 까지는 공제 가능	상 동	상 동
'12.1.1. 이후	상 동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기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100억원 •15년이상 : 15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13.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상 동	상 동
'14.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기업상속재산가액	기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200억원 •15년이상 : 300억원 •20년이상 : 500억원
'16.1.1. 이후	공동상속 허용	상 동	상 동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18.1.1. 이후	상 등	상 등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20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30년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 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 가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별표] <신설 2017. 2. 7.> <개정 2019. 2. 13.>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기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기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 (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 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전업(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전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제 3 장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정보서비스업(63)
차.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물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사회복지서비스업(87)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2) 피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 최대주주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직접 가업에 종사(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 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③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4)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00%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9. 1. 1.부터 시행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상속공제 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기업상속재산명세서
- 법인기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1)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기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금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기업용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처분하여 사후의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과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

• 기간별 추징율

기 간	추징율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위반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8⑧)
- 세무서장은 기업상속 이후 기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기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합니다.

*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text{이자상당액} = \text{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times \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text{상속세 부과당시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1.8\%)} / 365$$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법 §18⑥)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기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함)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10년 후 판단)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증령 §15⑧)

① 기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기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기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정세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상증법 §18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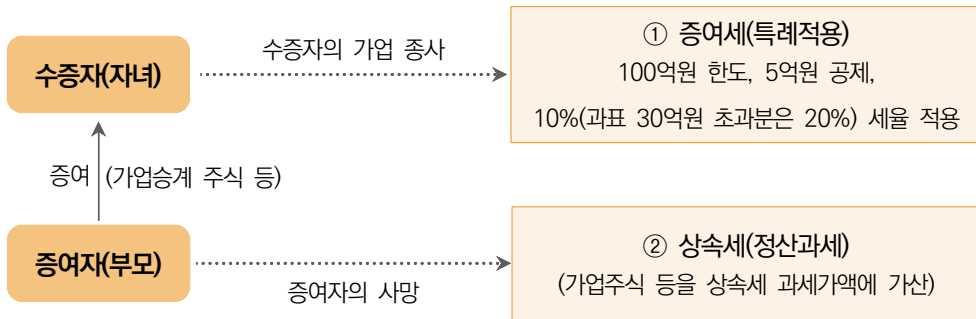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특법 §30의6)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증여자 요건

- ① 기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등 : ❶ 기업상속공제 편 참조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3) 증여 물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증여세 과세시 기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과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고,
-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기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시가액 × $\left(1 -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1. 가업상속공제 편을 참조(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 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기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승계 사후관리

1) 증여 후 기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기업 주식의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기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 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cdot \text{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3/10000$$

- 사후 의무이행 위반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후 의무이행 위반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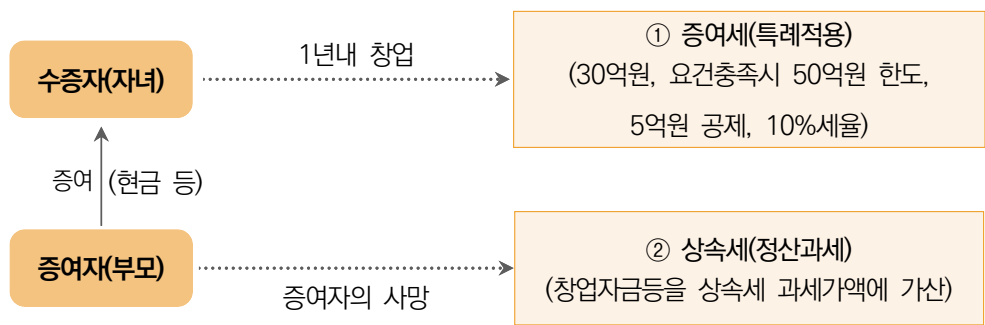
- 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업 주식 등을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특법 §30조의5)
 이 규정은 2006.1.1. 신설하여 창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한시적인 적용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창업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제한이 없이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3)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특법 §6③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6③)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19.1.1 이후부터)은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18. 물류산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1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29.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31. 이용 및 미용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II-3. 창업의 범위」의 내용 참고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 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므로 공제한도액이 증가합니다.
 - * 증여 당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 1) 3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①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과세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text{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text{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text{명})$$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위 2)-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위 2)-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3/10000

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2020.12.31. 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조특법 §101)

■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총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주식 등 할증평가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1)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2) 최대주주 판단

-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3)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 할증률 |

구 분	일반기업 주식	중소기업 주식	
지분을 50% 이하	20% 할증	10% 할증	'20.12.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
지분을 50% 초과	30% 할증	15% 할증	

4)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3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2차 출자법인”이라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16.1.1. 이후 평가분부터)

■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2005년 1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주식 과세특례는 상증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 제도’는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치 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상증법 §71)

■ 연부연납제도란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연부연납 기간

- 연부연납기간은 아래 구분에 의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①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 ②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증여재산의 경우 → 5년

| 연부연납기간 |

세 목		연부연납기간 (2019.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 상속 재산	50% 미만 소유
		50% 이상 소유
	일반상속재산	
증여세		

■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②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left[\text{상속세}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text{상속재산가액}}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1)}$$

*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13.3.1.~ '14.3.13.	'14.3.14.~ '15.3.5.	'15.3.6.~ '16.3.6.	'17.3.15.~ '18.3.18.	'18.3.19.~
연 3.4%	연 2.9%	연 2.5%	연 1.6%	연 1.8%

|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 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제4장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1. 중소기업 기준 114
2. 중복지원 배제 115
3. 농어촌특별세 적용 115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117
5. 최저한세의 적용 117
6. 구분경리 119

제4장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1.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문별로 공제·감면이 적용가능한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니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업종 :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업종 ※ 주업종: 평균매출액등이 큰 업종
규 모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으나 평균매출액 등을 매출액으로 봄 ※ 해당 과세연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평균매출액등 ※ 직전 과세연도 기준
독립성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 (졸업기준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 (졸업기준 적용)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관계기업 : 외감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업종별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 판단시 관계기업 간 합산하여 판단)

2.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127)

-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의 자산, 국가등이 대납한 이자비용, 국가등의 저리융자시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투자관련 세액공제 등 적용 시 투자(취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조특법 §127①).
- 조특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7②).
 - 이 때 중복적용의 판단기준은 투자자산별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과세연도에 내국인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 각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 주식(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조특법 §127③).
-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127조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규정과 공제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7④).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각종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7⑤).

3. 농어촌특별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 비과세·소득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특별감가 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73)등은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기술 및 인력 개발,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10의2)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11)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의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1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의3)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 ·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조특법 §63의2)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104의8①,③)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30의2)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30의4)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121의2에 따른 감면 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4⑦).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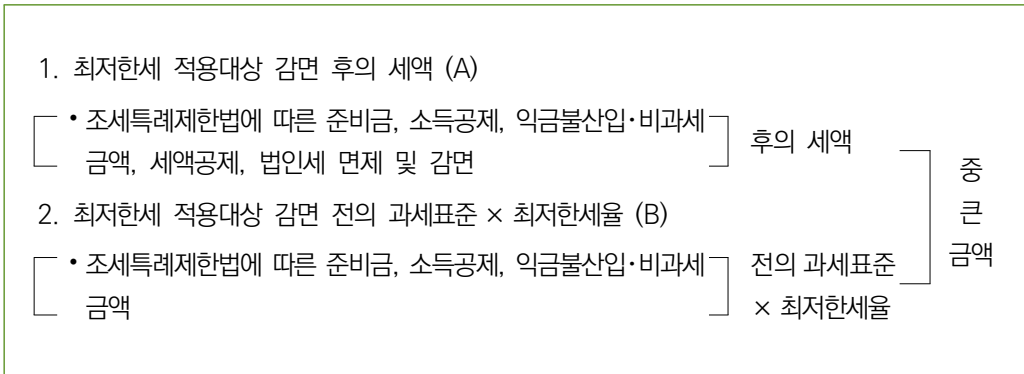
- ①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항 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 ② §25【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항 5호(안전시설)
 - * 라목(비상대비시설), 바목(기술유출방지설비), 아목(내진보강시설) 제외
 - 제1항 6호 가목(공정개선·자동화시설), 나목(첨단기술설비)
- ③ §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최저한세의 적용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념·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 §132)

-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 §55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 §56)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일부 공제·감면 항목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3. 가산세 등
-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4. 최저한세 적용제의 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 등

* $A < B \rightarrow (B - A)$ 만큼 공제·감면 적용 부인(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세율

구 분	과세표준	'10년	'11~'12년	'13년	'14년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9%	9%
	100억 이하	10%	10%	10%	10%
	1천억 이하	11%	11%	12%	12%
	1천억 초과	14%	14%	16%	17%

6. 구분경리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해 주는 제도
이므로
 - 내국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

6-1. 개 요

- '10.1.1. 개정 전에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할 감면 제도를 열거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토록 하였으나,
 - 개정 후에는 포괄규정방식으로 전환하여 감면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경리함을 명확화하고, 업종(감면비율)별 구분경리하여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법 §143)
 - 예시적으로 구분경리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 §6)
-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법 §7)
-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10)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
- ④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법 §10의2)
 - *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 가능
- 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 감면(법 §12의2)
- ⑥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세액감면의 승계(법 §31④,⑤)

- ⑦ 법인전환에 의한 세액감면의 승계(법 §32④)
- ⑧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법 §33의2)
- ⑨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법 §48)
 - *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
- ⑩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법 §55의2④)
- ⑪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법인세 감면(법 §62④)
- ⑫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법 §63)
- ⑬ 법인의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세액감면(법 §63의2②)
- ⑭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세액감면(법 §64)
- ⑮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법 §66)
- ⑯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법 §67)
- 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면제 등(법 §68)
- ⑱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법 §85의2③)
- ⑲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85의6)
- ⑳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법 §102)
- ㉑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법 §104의10)
- ㉒ 외국인투자 세액감면(법 §121의2, 법 §121의4)
- ㉓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법 §121의8)
- ㉔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법 §121의9②)
- ㉕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법 §121의17②)
- ㉖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법 §121의20)
- ㉗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1)
- ㉘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2. 구분경리 방법

-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공통손익 구분		구분경리(안분계산) 방법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익금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공통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

- 수개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5)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3자리)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2자리)에 의합니다.(법칙 §75②)
-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합니다.
 - 개별손익 :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 또는 귀속 구분이 분명한 손익
 - 공통손익 :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손익 또는 귀속 구분이 불분명한 손익

6-3. 개별손익·공통손익의 계산방법(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가. 개별익금

- 1)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개별익금으로 구분

- 2)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 개별익금으로 구분

〈부수수익의 예시〉

- ①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② 채무면제익
- ③ 원가차익
- ④ 채권추심익
- ⑤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 ⑥ 준비금 및 총당금의 환입액

- 3)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구분 예시

- ① 수입배당금
- ② 수입이자
- ③ 유가증권처분익
- ④ 수입임대료
- ⑤ 가자금금인정이자
- ⑥ 고정자산처분익
- ⑦ 수증익

나.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익금의 예시〉

- ①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 ③ 공통손금의 환입액
- ④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다. 개별손금

1)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개별손금의 예시〉

- ① 매출원가
- ②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 ③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 ④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2)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예시

- ① 유가증권처분손
- ② 고정자산처분손

라.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손금의 예시〉

- ① 사채발행비 상각
-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③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마.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란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님

바. 외환차손익

- ①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②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③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④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⑤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⑥ 외환증서·외화표시예금·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⑦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 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법기통113-156...7)

6-4. 구분경리 사업간 결손금 통산방법

-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합니다.(조특법 §143③)
 -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합니다.

제5장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 128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129
3.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130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 130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130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131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131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132
9.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132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132
11.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133
12.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133
13.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135
14.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 135

제5장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1-1.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납기연장·징수유예 최장 9개월, 체납처분유예 최장 1년간 유예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금 액	유 형
5천만원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	① 생산적 중소기업
	②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③ 사회적기업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2억원	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⑥ 재기 중소기업인
	⑦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⑧ 스타트업 기업
	⑨ 혁신중소기업
5억원	⑧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⑨ 종합인증우수업체(관세청)
	⑩ 모범납세자1)
	⑪ 세금포인트2)

① 국세청장 이상 표창 : 3년간, 지방청장 이하 표창 : 2년간

② Min(사용가능 포인트 × 100,000원, 5억원)

1-2.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 자금으로 중소기업 및 정부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을 1년간 압류유예하여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 특히 부동산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마지막 순위로 압류

1-3. 사업용 자산, 서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공매유예

- 사업용 자산과 서민주택이 압류된 경우, 납세담보가 불충분하더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 기업의 정상 가동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1-4.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1억원의 한도내에서 담보없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2014.4월부터 중소기업의 대상 범위 확대)
 - 모범납세자, 혁신중소기업 등
 - 직전년도 과세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3.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전년 보다 일자리를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2% 이상, (수입금액 3백억~1천억원 미만) 4% 이상

- 상세한 지원요건, 제출기간 등의 내용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됩니다.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장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간이조사’를 실시합니다.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국세청은 2014. 3. 3.부터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혼자서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입니다.
 -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16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미리 알려주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사전 제공,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제공
- (연말정산 결과예상)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 세액을 간편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한 화면에서 손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신고서 등 미리 채워주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작성

간편 제출 서비스

- (근로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회사)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가능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항목('06년 귀속 8개 → '18년 귀속 14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택시에 충전하는 LPG부탄에 대하여 kg당 40원의 유류세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당초 '10.4.30. 일몰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21.12.31.까지 연장

9.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지방청장,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국세청과 협약 체결된 1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 표창수상일로부터 일정기간 대출금리 이자율 일정수준 인하, 각종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혜택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금융지원 대상 등 상이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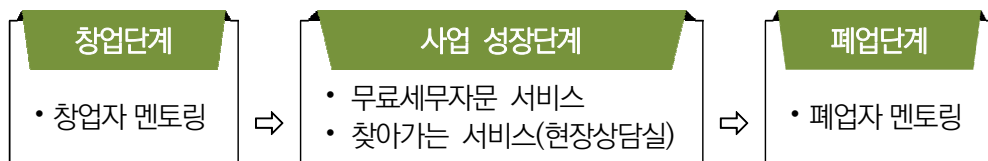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11.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회계사*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헌신할 세무대리인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세무·회계사(멘토)지정일 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세무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생업에 바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폐업자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 이후 나눔세무·회계사(멘토)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12.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4.3.1일부터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법인으로 확대·운영하여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대상세목 및 부여기준) '12. 1. 1 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의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함
 - * 신고·자납세액 : 환급 차감, 고지분 제외, 원천징수한 세액 포함
- (소멸) 세금포인트는 매년 2월에 최근 5년간의 납부실적으로 부여 하고, 6년 이전 납부 실적은 소멸함
- (납세담보 면제) 사용가능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고, 징수유예·납기연장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 가능
 - *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
 -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
- (승인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 *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참조
- (신청세목)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
 -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 §39),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 §40) 등 본래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것은 제외

13.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

- 상속·증여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발간·배포
 - 기업승계 세정지원팀 및 기업승계 상담창구 운영하여 잠재적 기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
 - *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세목별 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 CEO를 위한 기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 개설
 - * 참가신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2주~3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발행일자	2019년 4월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집필·편집	법인세과장 김성환 행정사무관 김지연 국세조사관 권영훈 정영선

- *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 (☎ 044-204-3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의 내용은 2019년 1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적용 시 개별 사안별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